



# 부산광역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산교통공사 정관 인가 및 제규정 승인사항 통보

1. 부산교통공사 설립위원회의 요청에 의거 승인·인가된 부산교통공사 정관 및 제규정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추진에 차질없으시기 바라오며

2. 부산교통공사 설립위원회 3차 회의시 채택키로한 신규임용자에 대한 정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노사간 임단협시 본 권고사항이 협의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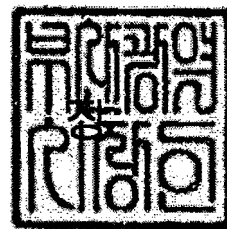
○ 부산교통공사 설립위원회 권고사항

부산시 타 공사공단 직원의 정년과의 형평성을 감안, 부산교통공사에 직원의 정년을 조정토록 권고키로 한다.

붙임 1 부산교통공사 정관 1부

2. 부산교통공사 제규정(별송). 끝.

부산광역시



수신자 부산교통공단이사장, 부산교통공사 사장(내정자)

담당자	주동식	지방행정사무관	최영규	교통기획과장	김규형	교통국장	전결 12/29 윤종대
-----	-----	---------	-----	--------	-----	------	-----------------

협조자

시행 교통기획과-12859 (2005. 12. 29.) 접수 ( )

우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

전화 051)888-8282(행8282) 전송 888-3359 / dsju@metro.busan.kr / 공개

# 부 산 교 통 공 사 정 관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부산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교통권역 내의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생활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공사의 명칭은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약칭 : BTC) 이라 표기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며, 부산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7조2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시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공고의 방법) 공사가 공고할 사항은 부산시보, 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또는 공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공사의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 제2장 사 업

제6조 (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2. 「도시철도법」 제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 개발사업

3. 「주차장법」 제12조의3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설치·관리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기존 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버스운송사업(단, 마을버스운송사업 기준에 의함)
5.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환승시설의 건설·운영 및 대중교통 체계개선 관련 사업
6. 도시철도 운임징수와 관련한 전자지급수단에 관한 사업
7. 광고·임대사업 및 교육훈련사업 등 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운임 및 부가운임의 결정) ①공사는 도시철도 여객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도시철도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부가운임의 징수 절차와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9조 (임원)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비상임이사 10인 이내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비상임이사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시의 교통국장 및 재정관으로 하며, 위촉직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위촉한다.

1. 기업의 전문경영인 및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통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3. 변호사·회계사·노무사 또는 세무사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도시철도 관련 분야에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제10조 (임원의 임면) ①사장은 「부산광역시 공사·공단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감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의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상임이사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제14조 (직원의 임면) ①공사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②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7조 (임·직원의 교육훈련) ①사장은 임·직원에게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임·직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임·직원의 보수) 임·직원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받는다. 다만,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직원의 신분보장) 공사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직위해제 또는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거나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 (고문·자문 또는 위원회의 운영) ①사장은 공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문 또는 자문을 두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 (조직 및 정원) ①공사에는 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및 감사 1인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본사에는 본부·실·단·처 및 팀 등을 두며, 현업에는 사업소 등

을 둔다.

②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 제4장 이 사 회

제24조 (설치 및 구성)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결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기본계획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도시철도 운임에 관한 사항
8. 사채발행, 차관도입 또는 차입 및 그 상황에 관한 사항
9.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손익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10. 자본금의 증자 및 감자에 관한 사항
11.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12. 지사 또는 출장소의 설치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소집 및 의장) ①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

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7조 (결의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5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사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전 또는 토의를 요하지 않는 안전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③사장은 이사회 결의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결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장 재무회계

제28조 (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9조 (예산) ①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 개최 30일 전까지 각 이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예산이 법령 또는 예산편성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어 시장의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결산)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사장은 결산 승인 후 5일 이내에 결산서 및 재무제표를 시의 공보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 (회계의 원칙) 공사의 회계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는 사업분야 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 (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②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1. 적립금
2. 이익준비금

제33조 (재산의 관리·처분 및 귀속) 공사 재산의 관리·처분 및 귀속에 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 (기금조성) 사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5조 (재정지원) 공사는 재해복구 및 기금의 설치·운영 등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장 사 채

제36조 (사채발행 및 차관) ①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발행의 한도는 공사 순자산액의 4배 이내로 한다.

②공사는 시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의 원리금 상환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의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모집 및 인수방법

제37조 (차입) ①공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장기 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예산에 정한 차입한도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에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다.

②공사는 시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장 보 칙

제38조 (경영공시)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39조 (공사의 규정) 공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 (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시장의 승인사항) 공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연봉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보수관련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제42조 (경영성과계약) 사장은 임명시 및 매년 1월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공기업 정책준수의무, 연도별 경영목표 등을 반영한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있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사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사의 설립행위)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설립위원회에서 공사설립에 따른 제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는 공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부산교통공단의 사무는 조례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가 포괄승계 한 것으로 본다.